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4655 첨단기술·제품확인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
담당변호사 배지영
피 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송종훈, 정창원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C 첨단기술·제품 확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4. 9. 무선 네트워크 장비 개발·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참가인은 유·무선 통신시스템을 개발·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21. 7. 27. 피고에게, 'D'(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첨단기술·제품 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8. 17. 참가인에게, 이 사건 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의 '이동통신 분야-유무선 통합 액세스 기술'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E 등은 2021. 10. 7. 수원지방법원에 아래와 같은 요지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고(2021고단5486), 참가인은 2022. 1. 10.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사유로 산업기술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22가합10630).

1. 피고인 E¹⁾는 2020. 4. 초순경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A로 이직한 연구원인 피고인 G에게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라고 하고, 각 주



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서 유출한 I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5G 통신용 I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20. 4. 22.경 위 A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J' 파일을 사용하여 5G 통신용 I 소스코드인 'K'을 생성하고 그 때부터 위 파일을 토대로 계속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2021. 2. 9.경 A의 공용 서버인 'L 서버'에 위 5G 통신용 I 소스코드의 업데이트 버전인 'M'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G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피해회사에서 유출한 산업기술 자료인 I 소스코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의 대표자 E, 사용자인 G이 위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I 소스코드를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어떤 기술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첨단기술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기술은 산업기술 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이를 보유하는 기관은 산업기술 보호법상 '대상기관'의 지위에서 위 법이 정하는 각종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 이 사건 확인은 대상기관에게 어떠한

1) E는 피해회사의 자회사인 F의 대표이사이자, 또 다른 자회사인 참가인의 연구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각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20. 4. 9. A를 설립하였다.



한 창설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기술을 침해한 행위로 인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확인의 효력을 다룰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확인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등 참조).



나)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에 관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그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이 사건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면 첨단기술 및 제품 여부의 확인신청 및 확인서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신청기술 설명서, 첨단기술·제품 확인신청서(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그 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위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기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첨단기술·제품의 해당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또한 피고는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첨단기술·제품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은 첨단기술·제품의 확인신청 및 확인서 발급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의 내용, 체계에 더하여 갑 제5 내지 7, 16,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첨단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대상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령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제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22조의2) 등을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받을 자격을 갖게 되며, 위 법에서 정하는 각종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상기관이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행위에 대하여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2) 대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산업기술보호법령 등에서 법규상 그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는 이러한 확인신청에 대하여 검토·확인 의무를 부담하고, 산업기술보호법령 및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 등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게 된다. 이러한 확인서 발급행위는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인 행정청의 지위에서 관계 법령에서 부여받은 권한 행사 내지 의무이행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확인서 발급은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3) 한편 참가인이 2021. 7. 27. 피고에게 제출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신청서는 이 사건 기술이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기술·제



품의 개요·우수성·보유근거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검토를 의뢰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 사건 기술이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고시 제2조에서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기술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다.

(4) 이와 같이 대상기관이 확인을 신청한 기술 및 제품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 등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를 매개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고시의 발령에 따라 즉시 결정되어 피고의 확인서 발급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참가인은 이 사건 확인의 효력에 따라 보유한 첨단기술에 대하여 특허권과



동일한 정도의 독점적 권리 내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확인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른바 경원자 관계나 경업자 관계와 같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민·형사상 불이익은 이 사건 확인이 제3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하여 원고가 첨단기술에 포함되는 이 사건 기술을 유출하는 등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심리·판단됨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법절차에서 그와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인의 효력을 다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확인의 효력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혁

 판사 서동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08

판사 정세영



별지

관계 법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 ① 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①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소속기관의 장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

-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술”이라 한다)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 설명서
 2.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해당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임을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등)

- ①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산업분야별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1항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할 수 있다.

제3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 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첨단기술 및 제품여부 검토·확인)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0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분야명칭 : 26. 이동통신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	선정 년도	순 번
이동통신 시스템	광대역 이동통신시스템	모바일 코어망 기술	유무선 통합 액세스 기술		3

끝.